

【특집2: 일제강제동원과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 강제동원 손해배상 정부안으로서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소진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민법

engoflaw@gmail.com

<국문초록>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하 ‘정부안’)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인수하여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한테 배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야당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 등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제강제

\* 심사위원: 김채윤, 김중서, 이은희

투고일자: 2023. 6. 14. 심사개시: 2023. 6. 14. 게재확정: 2023. 6. 25.

\*\* 이 글은 2023. 4. 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사법분과포임에서 발표한 글은 수정·보완한 것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민사법분과 회원들과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강행하였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로서 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판결에 의해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는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는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를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적용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강제징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제3자 변제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의 쟁점과 내용
- III. 정부안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V.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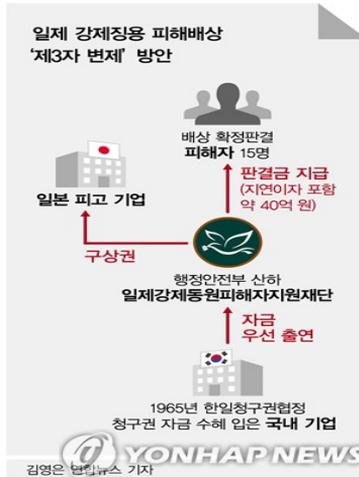
그녀는 티브이 받침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백지를 꺼낸다.  
반으로 접힌 백지를 펼치자 또박또박 힘을 주어 쓴 글자들이,  
억눌려 있던 스프링처럼 앞다투어 튀겨 오른다.  
**나도 피해자요**  
그 한 문장을 쓰기까지 70년이 넘게 걸렸다.

- 김숨, 「한 명」(현대문학, 2016), 236쪽.

## I. 들어가며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안(이하 ‘정부안’)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8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sup>1)</sup>에 따라 피고 일본 전범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한국의 <일제강제동

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일제강제동원재단’이라고 함.)<sup>2)</sup>이 인수하여,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니라 일제강제동원재단이 원고인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배상금<sup>3)</sup>의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은 한국기업, 예컨대 포스코, 한국전력, KT 등 16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충당한다.<sup>4)</sup> 정부안의 자세한 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의 정부안<sup>5)</sup>

-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 2일에 설립된 공익법인.
- 3) 정부 및 강제동원은 각주 2)의 대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판결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송의 청구 취지와 판결로 인해 피고가 이행해야 할 급부의 성질을 흐리는 것이므로 ‘판결금’ 아니라 명확하게 손해배상금으로 써야 할 것이다.
- 4) 3월 15일 포스코는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였고, 나머지 15개 기업 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한국전력, KT, KT&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0%인 6곳만 정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수혜기업이 아니었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협중앙회는 출연 계획이 없다는 방침이며,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 기업은행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40%만 “검토”...60%는 “계획 없어””, 2023. 3. 17., <[https://www.ytn.co.kr/\\_ln/0102\\_202303170200587121](https://www.ytn.co.kr/_ln/0102_202303170200587121)>, 검색일: 2023. 6. 7.

그러나 이번 정부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자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sup>6)</sup> 또한 정부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추심소송을 제기하였다.<sup>7)</sup>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sup>8)</sup> 학계,<sup>9)</sup> 종교계,<sup>10)</sup> 야당<sup>11)</sup>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 
- 5) 그림 출처: 연합뉴스, “정부, 강제징용 해법 제시… 한국 재단이 대신 배상”, 2023. 3. 24.,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30404113442\\_947118](http://www.yonhapmidas.com/article/230404113442_947118)>, 검색일: 2023. 4. 5. 그러나 그림과 달리 일제강제동원재단은 채무자인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KBS, “정부 ‘제3자 변제 발표’..양금덕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 2023. 3. 6.,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3060055>>, 검색일: 2023. 3. 23.
- 7) 3월 13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대리인 측은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과 관련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전달했다. 뉴스핌,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제3자 변제’ 정부안 거부”, 2023. 3. 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16000842>>, 검색일: 2023. 4. 6.; 4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프레시안, “직접 행동나선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기업 재산 압류했다.”, 2023. 4. 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51552572763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515525727637?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검색일: 2023. 4. 6.
- 8) 뉴시스, “시민사회단체 “尹, 일본 태도 안 변하면 결렬 선언해야””, 2023. 3. 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5\\_0002227505&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5_0002227505&cID=10201&pID=10200)>, 검색일: 2023. 3. 23.
- 9) 경인매일, “한일정상회담 결과 둘러싼 후폭풍, 대학가로 계속 번져”, 2023. 4. 6.,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436>>, 검색일: 2023. 4. 6.; 오마이뉴스, “광주·부산·서울·충남...번지는 강제동원 정부안 철회 촉구 대학교수 성명”, 2023. 4. 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635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635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검색일: 2023. 4. 6.
- 10) 노컷뉴스, “韓日 성공회,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일방적 발표 철회하라” 공동성명”, 2023. 4. 5., <<https://www.nocutnews.co.kr/news/5922592>>, 검색일: 2023. 4. 6.
- 11) 연합뉴스, “野 김남국, ‘제3자변제’ 저지법 발의…‘피해자 동의요건 강화’”, 2023.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이후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sup>12)</sup> 등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일제강제동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강행하였다.<sup>13)</sup> 게다가 제3자 변제로서 재단의 판결금 수령을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을 고려하고 있음을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의 적용에 대하여 민법 제496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법원판결을 먼저 살펴본다.

## II.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의 쟁점과 내용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모두 3건인데, ①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 1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② 미쓰비시중공업이 피고인

---

4. 5.,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151300001?input=1179m>>, 검색일: 2023. 4. 6.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첫째, 일제강제동원 재단이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의요건 강화하고, 둘째,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12) 한겨레21 제1458호, “블랙핑크의 연막을 걷어내면 보이는 것”,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647.html](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3647.html)>, 검색일: 2023. 4. 6.

13) 한겨레, “정부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10명에게 배상금 지급 완료””, 2023. 4. 1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844.htm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844.html)> 검색일: 2023. 6. 8. 또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고 여운택씨의 유족이 최근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국제 자산 압류·매각 명령신청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강제동원’ 유족, 정부 해법 수용 배상금 수령 의사”, 2023. 5.1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6008005&wlog\\_tag3=daum](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6008005&wlog_tag3=daum)>, 검색일: 2023. 6. 8.

사건이 2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이다.<sup>14)</sup>

위의 3 판례 중 ①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실관계

1930년대 이후 일본의 거둬들인 전쟁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 군수 기업과 일본 정부가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동원하였고, 원고들은 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다. 피고는 당시 가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를 승계한 기업으로, 피고회사의 전신기업인 ‘구 일본제철’은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강제동원한 근로자들을 구타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물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들은 일본이 패전하여 해방된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원고들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에 앞서 1997년 일본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으나 2003. 11. 09.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였고, 2005년 위의 원고

<sup>14)</sup> 2022. 7. 기준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에서 소송은 모두 70건으로, 이중 4건은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66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일본기업 대상 한국 내 소송 현황

현황구분	사건	원고	피해 당사자	비고
판결확정	4건	37명	15명	- 원고 승소: 3건(15명) - 원고 패소: 1건(1명)
대법원 계류	9건	125명	추산안됨	- 원고 일부승소: 9건 (2018. 12. 대법원 계류 중)
2심계류	4건	85명	추산안됨	- 원고 승소: 1건(원고 중 1명만 승소) - 원고 패소: 3건(소멸시효)
1심계류	53건	892명	추산안됨	
계	70건	1,139명		

\* 출처: 이국인,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본 정부해법의 문제와 대응 방향”, 강제동원 정부해법 검증한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국회 토론회 자료집 5쪽의 소송 현황표 수정 재인용, 2023. 3. 13.

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제1심과 2009년 제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위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하였다.<sup>15)</sup> 2013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sup>16)</sup> 신일철주금이 재상고하였으나, 2018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고 신일철주금이 각 1억 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 2. 주요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쟁점과 그 판단

주요 쟁점	판단
① 원고들 중 일부가 일본 법원에서 받은 패소확정판결이 한국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sup>17)</sup>	● 일본 법원의 판결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우리나라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②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채무가 피고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sup>18)</sup>	●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채무는 피고회사에 승계된다고 판단함.
③ 피고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sup>19)</sup>	●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음.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④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으나, 다수의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1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16)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17) 이와 관련해서는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83-325쪽 참고.

18) 천경훈,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

앞의 쟁점 가운데 ④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이하 ‘쟁점 ④’라고 함)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쟁점 ④에 대한 판단

다수의견은<sup>20)</sup>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이 있었고, 강제동원의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한 갖는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별개의견 1은<sup>21)</sup> 이미 2012. 5. 24.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별개의견 2는<sup>22)</sup>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sup>23)</sup>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 개인의 소재기에 따른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

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433-470쪽.

19) 남효순,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93-432쪽.

20)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7명).

21) 대법관 이기택(1명).

22)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3명).

23)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2명).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는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4. 소결

피해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일본과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청구원인은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일본재판에서는 첫째 피고기업의 전신인 구 일본제철이 행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동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책임), 둘째,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계약책임),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당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채권의 청구(계약책임)이다.<sup>24)</sup> 2012년 대법원판결<sup>25)</sup>은 이 중 ‘강제동원’<sup>26)</sup>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고, 특히 여기에 대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

24) 일본판결에서는 “구 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원고들을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고들에 대한 구 일본제철의 채무는, 불법행위 당시의 구 일본제철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2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26) 2018년 대법원판결의 판단대상은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점인데, 강제동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불법강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제 법령 중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배제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정되는 불법행위이다.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지식산업사, 2022), 64-65쪽.

구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밑줄은 글쓴이의 표시임)

정리하자면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강제동원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윤석열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는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를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일제강제동원재단)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 정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Ⅲ. 정부안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제3자 변제

한국 민법 제469조는 제삼자 변제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27) 이에 대해서는 “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④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적상 명백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69조(제삼자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변제하는 것”<sup>28)</sup>을 말하는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인데,<sup>29)30)</sup> 제3자 변제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은 소멸하고, 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제3자 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첫째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둘째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 대한 제한이다. 그러나 위의 제한 사유 가운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재단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자인 일본기업은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31)</sup> 따라서 세 번째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 앞의 두 개의 제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

28) 김형배/김규원/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5판(신조사, 2016), 1127쪽.

29)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박영사, 2019), 968쪽.

30) 제3자 변제 규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중국,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정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효용성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23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189-218쪽 참고.

31)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판결). 또 피고 기업은 대법원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단의 채무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의사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세은, “강제동원 정부해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검증한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국회 토론회 자료집(2023. 3. 13.). 26쪽

고자 한다.

## 2. 민법 제49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제3자 변제의 제한

### 2.1.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 예컨대 일신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채무로서 채무자의 인적 요소, 즉 인격이나 고유한 기능 등이 채무의 주요한 의미가 있는 급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나 시연과 같이 타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급부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일신전속적인 급부 가운데 절대적인 것은 제3자의 변제가 언제나 금지되지만, 노무자의 급부(제657조 제1항), 수입인의 급부(제682조)와 같이 상대적인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 변제가 허용된다.<sup>32)</sup>

그러면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가해자인 일본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 정부는 손해배상채무가 금전채무이므로 제3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의 첫 번째 목적과 이념은 부정의(不正義)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시정하고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 구성원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침해적 행위는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 및 인간 상호 간의 동등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도덕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동등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이와 같은 정당한 대응은 인격적 침해로 인해 깨진 평형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적 정의를 말한다.<sup>33)</sup>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응보의 원칙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구체적 지급수단으로서

32)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 958쪽.

33) 송에스더, “중대한 인권침해시의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2호(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0), 86쪽.

금전배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 등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규정에 준용하고 있다.<sup>34)</sup> 특히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제394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 역시 금전배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에만 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제39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의하거나 또 당사자의 의사표가 없더라도 법률규정<sup>35)36)</sup>에 의해 금전배상 외의 원상회복<sup>37)</sup>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본기업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 의무이므로 배상의 원인인 손해는 재산상 손해(물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가 아닌 비재산적 손해로서 주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손해를 객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전배상을 할 뿐 가해 당사자의 비금전적 구제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불법성과 그 위법행위의 전제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이라는 국가범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34)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35) 예컨대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6) 이외에도 특허법 제131조는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상표법 제11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및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가 있다.

37) 이에 대해서는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비교사법 제10권 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77-119쪽; 최문기, “민법 제394조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소고”, 경상법학 제17집 제2호(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3-75쪽;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한양법학회, 2010), 381-410쪽 등 참고.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이하 ‘유엔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sup>38)</sup>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원칙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sup>39)</sup> 특히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배상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또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시정함으로써 정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40)</sup>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서 금전배상의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 이외의 다른 구제수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누가 배상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정부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잘못을 시정하여 부정의를 바로 잡는 배상의 책임은 유엔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해자의 인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 제496조 제1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2.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예컨대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38)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9) 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방식으로 원상회복(Restitution)과 금전배상(Compensation) 외에는 재활 조치(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 방지의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들고 있다. 특히 만족은 지속적인 침해 중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인정을 포함하는 공식 사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재승, 국가범죄(엘퍼, 2010), 193-194쪽.

40) IX. Reparation for harm suffered

15.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 is intended to promote justice by redressing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n cases where a person, a legal person, or other entity is found liable for reparation to a victim, such party should provide reparation to the victim or compensate the State if the State has already provided reparation to the victim.

(계약) 또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3자의 변제가 있기 전에만 있으면 충분하다.<sup>41)</sup>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당사자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96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제3자 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만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변제자에게 정당한 거절을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다.<sup>42)</sup> ‘정당한’ 거절은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의 이행에 이익을 가지는 때로 이해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제3자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합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채무자만이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제3자 변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sup>43)</sup>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민법 제474조에 채무의 변제에 있어 제3자의 변제는 채권자의 의사에 변하여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일본민법 제474조 제3항) 또한 그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변제에 관한 제4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sup>44)</sup>

---

41) 김형배/김규완/김명숙, 앞의 책, 1127쪽.

42) Article 1342-1 Le paiement peut être fait même par une personne qui n'y est pas tenue, sauf refus légitime du créancier.

43)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크채권법 해제(박영사, 2021), 562쪽.

44) 第四百七十四条(第三者の弁済)債務の弁済は、第三者もすることができる。

2 弁済をするについて正当な利益を有する者でない第三者は、債務者の意思に反して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債務者の意思に反することを債権者が知らなか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3 前項に規定する第三者は、債権者の意思に反して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その第三者が債務者の委託を受けて弁済を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ことを債権者が知ってい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4 前三項の規定は、その債務の性質が第三者の弁済を許さないとし、又は当事者が第三者の弁済を禁止し、若しくは制限する旨の意思表示をしたときは、適用しない。

#### IV. 나가며

민법 제496조의 제3자 변제는 그동안 민법학계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 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이유에는 이 규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또한 현실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법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제3자 변제법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sup>45)</sup> 나아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와 노무자가 제3자에 의한 보수지급에 반대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민법 제469조 제1항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3자 변제 제한규정에 따라 제3자 변제가 제한된다. 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sup>46)</sup>는 사업주가 “고용노

45) 이와 관련해서는 김서기,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1-25쪽 참고.

4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중국판결
  -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7)</sup> 이는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3자 변제가 제한되어 사용자와 노무자 간에 고용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보수지급채무에 관해 제3자 변제금지 특약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노동자가 임금채불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우려한 정책적 고려로서 민법 제3자 변제 규정과 충돌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의 정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8년 대법원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등의 국제적 범죄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국가범죄의 처벌과 배상은 정의의 근본 요구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논리적 귀결은 원칙적으로 배상으로 가해자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sup>49)</sup> 따라서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중심의 조치가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 없는 정부안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로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저지하고,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해화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다른 국가

47) 김서기, 위의 글, 14쪽.

48) 이재승, 앞의 책, 179쪽.

49) 이재승, 위의 책, 187쪽.

범죄 혹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sup>50)</sup>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50) 통상 국가범죄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지만, 1차 행위가 아주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도 그 행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막는 후속행위들로 인하여 체제범죄로 상승할 수 있다.(이재승, 위의 책, 23쪽.) 현재 강제동원 정부안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저지하고 있고,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과거의 피해와는 별개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참고문헌>

- 권영준, 민법판례연구 I, 박영사, 2019.
- 김창록,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지식산업사, 2022.
- 김형배/김규원/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2016.
- 이재승, 국가범죄, 엘피, 2010.
-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2판, 박영사, 2019.
- 한불민사법학회,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박영사, 2021.
- 가정준, “‘제3자의 변제’에 관한 효용성 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2016, 189-218쪽.
- 김대정, “변제의 법적 성질 및 구성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2호, 2010, 419-456쪽.
- 김서기, “고용계약상 노무자의 보수채권 보호의 관점에서 제3자 변제 법리 소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제26권 제3호, 2020, 1-25쪽.
- 김어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동진, “제3자 변제와 변제자대위권”,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82호, 2018, 499-543쪽.
-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283-325쪽.
- 송에스더, “중대한 인권침해시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2호, 2020, 79-127쪽.
-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381-410쪽.
-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0권 1호, 2003, 77-119쪽.
- 천경훈,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2013, 433-470쪽.
- 최문기, “민법 제394조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 제17집 제2호, 2008, 53-75쪽.
- 홍관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9호, 2022, 191-276쪽.
- 김세은, “강제동원 정부해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강제동원 정부해법 검증한다, 2023. 3. 13. 23-27쪽.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n Yoon Suk Yeol Government's “performance by third pers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s

Kim, So-jin

Ph.D. in Law, The October 19 Institute SCNU

On March 6, 2023,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announced “performance by third person” as a government proposal on the issue of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government's claim is that South Korea's <Found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takes over the liability for damages borne by Japanese war criminal companies, and receives donations from companies of South Korea that benefited from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nd with that donation, the Foundation compensates the victims.

However,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government plan is that it did not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war criminal companies such as ‘Nippon Steel’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which are the perpetrators,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apology.

Victims are strongly opposed to such a government plan, criticizing it as a “disgrace of Korean diplomacy” and announcing their position that they will not accept money. It also completely rejected the government's proposal and filed a lawsuit to collect assets of ‘Mitsubishi Heavy Industries’. In addition, not only victims but also civil society, academia, religious circles,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expressing opinions criticizing the government's proposal.

In particular, after the Korea-Japan summit on March 16,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Fumio and President Yoon Suk Yeol made remarks denying the illegality and coercion of Japan's

forced mobilization. Nevertheless, without expressing any particular positi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oundation.

In addition, the Foreign Minister has said that if victims refuse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 foundation, they are considering a “deposit.” Therefore, I would like to critically review the application of “performance by third person” claimed by the government,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496 of the Civil Act.

Key phrases: forced labor mobilization, tort, damages, consolation money,  
performance by third person